

##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7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7. 23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7. 23.

(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 영 열

나. 제안사유

-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. 1. 8 설치되었던 한시기구(주민자치과)의 존속기한이 2004. 6. 30에서 2005. 6. 30까지 연장 승인되었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. 6. 30일까지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. (안 조례 제1714호 부칙 제2조)
- 관련근거
  -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승인 통보  
(전라남도 자치 12200 - 2388, 2002. 12. 4)
  -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·군 한시기구 처리지침  
(전라남도 자치행정과 - 5958, 2004. 6. 30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 용 태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당초 2004. 6. 30일이었던 것을 2005. 6.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한 조례안으로서,
- 전라남도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부 :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14호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 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 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 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 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